

E2B

EXPERT TO BUSINESS

2020년도 창업지원사업 예비창업패키지



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예비 창업자의 원활한 창업 사업화를 위하여 사업화 자금, 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

선정규모

창조경제혁신센터 : 총 550명 (청년 : 330명, 중장년 : 220명) / **대학 : 총 550명** (청년 : 330명, 중장년 : 220명)

창조경제혁신센터 (19개)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빛가람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포항
지원규모 (명)	청년	15	36	18	16	18	18	16	21	6	27	16	15	28	23	15	9	18	9	6
	중장년	10	24	12	10	12	12	11	14	4	18	10	10	19	16	10	6	12	6	4
대학 (17개)		강원	건국	경기	계영	대구	동아	부산	성균관	송실	연세	원광	인천	전북	한국산업기술	한밭	한양	호서		
지원규모 (명)	청년	12	21	24	11	18	16	19	22	24	19	19	20	21	19	20	24	21		
	중장년	8	14	16	7	12	11	13	15	16	13	13	13	14	12	13	16	14		

- 청년과 중장년 비중이 나뉘져 있기 때문에 세부 인원 수를 확인하고,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 하여 신청
- 거주지, 창업 예정지 등에 관계없이 1개 주관기관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접수마감 ('20.3.2(월), 18:00) 이후 변경 불가

신청자격

청년(만 39세 이하) + 중장년(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01	공고일 기준, 출생일자에 따라 청년, 중장년으로 구분하여 선정 예정 * 청년 : 만 39세 이하 ('80년 2월 1일 이후 출생)인 자 ** 중장년 : 만 40세 이상 ('80년 1월 31일 이전 출생)인 자
02	사업공고일까지 창업 경험(업종 무관)이 없는 예비창업자이거나 공고일 현재('20.1.31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과거에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참조)
03	협약 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창업이 가능한 자

신청 제외 대상

01	공고일 현재(20.1.31)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한 자
02	폐업 경험이 있는 자가 동종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로 재창업하고자 하는 자
03	동 사업의 사업화 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0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05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06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참고1)참조)을 지원받은 자,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07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08	기타 중소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참고 1]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09년 ~ `20년 (지원(신청) 제외 대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창업패키지 (舊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 초기창업패키지 • 외국인 기술창업 지원사업 •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 (TIPS 연계지원, 창업기획사) •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 •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집중육성) •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지원사업 •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 스마트벤처캠퍼스 (舊스마트벤처창업학교) • 스마트창작터 사업화 지원 (2016년) •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사업화) • 창업맞춤형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험실 창업 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연구원 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연구원 창업프로그램, 창업아이템상품화 지원사업,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사업 •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아이템 사업화 • 창업성공패키지 (舊청년창업사관학교) • 창업인턴제 (사업화) •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 (3단계) • 재도전성공패키지 (舊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형(Track 2), 투자형 지원자면 지원(신청)

지원 세부사항

예비창업자에게 시제품 제작, 지적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바우처(사용권)로 최대 1억원 한도 지원**

*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사업비 비목별 세부기준은 최종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평균 5천1백만원 지원 예정)

비목	정의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구·가구, 비품, SW 등)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등록 관련 비용
인건비	창업기업 소속직원(정규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에 대한 보수 / 사업 수행을 위한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 등 임시직에 대한 보수
지급수수료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운반비, 보험료, 법인설립비(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활용 시), 회계감사비 / 기자재 임차료, 사무실 임대료, 보관료
여비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타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 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 외부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포함)
창업활동비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월 50만원 한도)을 지급하는 경비

지원 세부사항

창업교육 :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3단계(총 40시간)에 걸쳐 창업에 대한 체계적인 창업교육 서비스 제공(필수)

구분	사전교육	역량강화교육	심화교육
이수시간	오프라인(4H) + 온라인(4H)	(16H)	(16H)
교육 진행 기간	협약체결 전 (선정된 예비창업자 대상)	협약진행 중 (사업을 수행 중인 자 대상)	협약진행 중 (사업을 수행 중인 자 대상)
교육 분야	사업 운영 기준 및 네트워크 중심의 교육	아이디어 보완 및 BM 구체화 등 이론 중심의 기초교육 및 창업자 간 교류 활성화 프로그램	마케팅·투자·브랜드 개발· 시장조사 분야에 대한 실무 교육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수자만 협약체결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기관별 교육 일정에 맞춰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4가지 교육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사전 일정 공지 후 교육 신청 자율특화분야 신설 : 기업에서 듣고 싶은 분야의 교육을 이수하면 전담기관에서 50만원 한도내에서 금액 지원

* 선정된 분들에게 교육내용 별도 상세 안내 예정

전담멘토 : 창업·경영 전문가를 전담멘토 또는 PD로 지정하여, 예비창업자 창업활동전반에 대한 밀착지원 서비스 제공(필수)

온라인 멘토링	오프라인 멘토링
창업 전반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시장·기술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성에 대한 검증을 거쳐 멘토 Pool을 구성	

신청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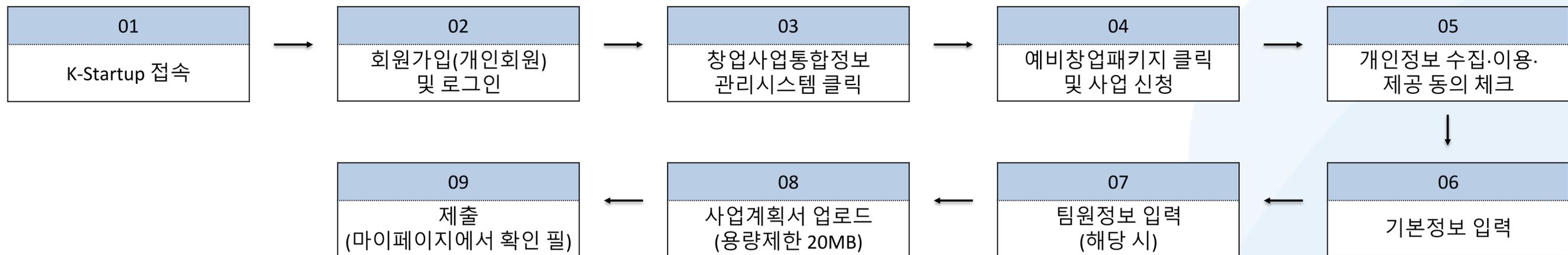
2020년 2월 3일(월) ~ 3월 2일(월), 18:00까지

* 신청 마감일 2~3일 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마감 이후 신청 불가)

신청절차

K-Startup(www.k-startup.go.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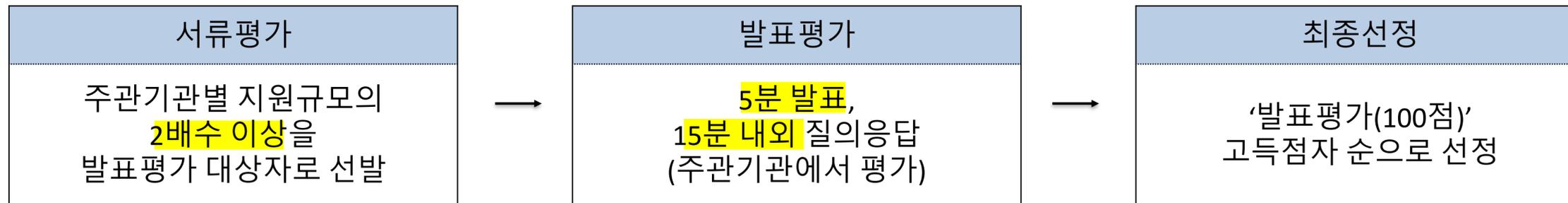
* 최종 선정자는 배정된 주관기관에서 예비창업자 사업비 집행 승인 및 관리, 멘토 매칭 등을 수행



선정평가

창업아이템 개발 동기, 사업화 전략, 시장진입과 성과창출 전략, 대표자와 팀원의 역량 등을 서류 및 발표 평가

* 서류평가 결과는 최종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최종선정은 발표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최종선정 시 서면평가 점수는 반영되지 않고, 발표평가 결과에 따른 순위로 확정됨
- 평가는 선택한 주관기관별로 진행됨
- 평가 방식, 평가 장소 및 일정은 주관기관 별 상이

가점사항

팀창업, 특허·지재권 보유자 등의 경우 가점 부여. 신청 시, 가점 증빙서류를 미 제출한 경우 가점으로 불인정

* 서류 평가 시, 가점을 부여

가점항목	점수
1) 팀창업 우대·2인 이상(대표자 포함)의 기술기반 예비창업팀 * 선정 시 조정되는 협약금액과 관계없이 협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팀원을 모두 채용하여 6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 선정 취소 및 전액 환수 조치 * 팀창업 기준은 [참고 2] 참조	1점
2) 신청한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 * 단, 권리권자에 한함. 출원 건은 제외하며 다수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가점은 최대 1점	1점
3) 최근 2년 이내(18~현재) 정부 주관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 창업경진대회 목록은 [참고 3] 참조 * 다수의 수상경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가점은 최대 1점	1점
4) 고용위기지역 거주자 *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장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양, 목포 거주자 (주민등록등본(초본)상 주소 기준)	1점

[참고 2] 팀창업 기준

<p>팀창업 개념</p>	<p>: 창업아이템 개발 등 위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보유한 <u>2인 이상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으로 이루어진 예비창업 팀*</u></p> <p>* 사업계획서 양식의 팀창업 신청서에 포함된 인력에 한하여 인정</p>
<p>팀창업 조건</p>	<p>: 선정자는 조정되는 협약금액과 관계없이 <u>협약체결 3개월 이내에 창업을 완료하고 팀원 1인 이상을 직원으로 채용</u></p> <p>- 팀원은 선정자가 창업한 기업에 4대보험이 가입된 직원으로 채용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팀원은 인건비 지급 불가</p> <p>*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팀원의 인건비는 선정자가 부담</p> <p>- 선정자와 친족관계(민법 제767조)에 있는 자, 창업자가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 1년 이내 기업 및 재직 중인 기업의 임직원인 경우</p> <p>팀원으로 구성이 가능하나, 인건비는 지급 불가</p> <p>- 팀원 1인 이상을 6개월 간 4대보험이 가입된 직원으로 유지</p>
<p>팀원 변경</p>	<p>: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제출한 팀원의 축소,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u>기존 팀원에 준하는 경력의 팀원으로 교체 가능</u></p> <p>* 사유예시 : 팀원의 이직, 퇴사, 군입대, 출산 등</p> <p>- 팀원 변경의 적정성 등은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최소 1명 이상의 팀원은 6개월간 유지 필수</p>
<p>팀창업 점검</p>	<p>: 팀창업으로 가점을 받은 자(기업)는 <u>팀창업 이행현황, 팀원의 근태현황 등을 현장점검을 통해 수시 확인</u></p> <p>* 고용계약서, 4대보험가입내역서, 근로현황, 업무내역 등 확인</p> <p>- 점검결과 부적정 현행*이 발견될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 협약중단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 제재조치 예정</p> <p>* 부적정 현행 : 팀원의 4대보험 미가입, 업무관련 현황(이메일, 출근기록 등) 확인불가, 창업아이테에 대한 이해도 부족 등</p>

[참고 3] 창업경진대회 목록

부처	경진대회명	인정대상
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대한민국 창업리그	본선 이상 입상자
	2019 한·핀란드 스타트업 서밋 대학생 아이디어 경진대회(해커톤)	혁신상, 성장상 수상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R&D 챌린지	특별상 이상 수상자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입선이상
	국제로봇콘테스트, R-BIZ 챌린지	수상자
	디스플레이 챌린지	수상자
	세라믹 신기술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자
보건복지부	바이오코리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자
국토교통부	대학생 자율주행자동차 경진대회	수상자
	국제 대학생 창작자동차 경진대회	수상자
해양수산부	수산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해양산업 오션비즈니스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금융위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
산림청	산림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특허청	지식재산 정보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수상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함께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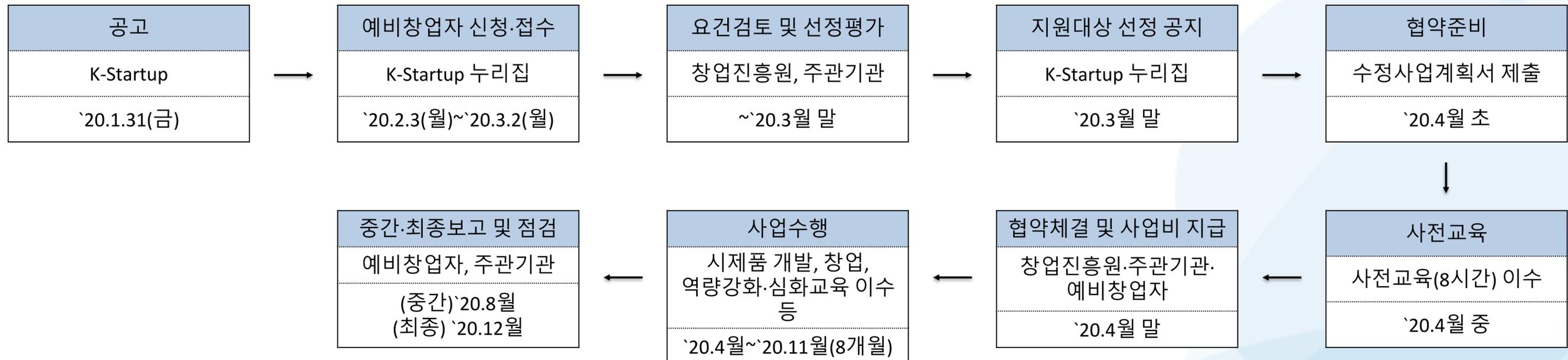
최종선정

주관기관별 예비창업자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및 예비창업자별 사업화 자금 한도를 최종 확정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 차등 지원

추진일정(안)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신청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②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합니다.

01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 또는 사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정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선정·지원 제외)
02	중기부 등 중앙부처의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동시 수행 불가)
03	주관기관을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신청하는 경우, 동 사업 전담 멘토에 대한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및 숙지 후 신청



대 표 이 경 선

info@willlab.co.kr

카카오플러스친구 @e2b

페이스북 : www.facebook.com/etobkr/

